

# UIA 실무용역 위원회(PPC) 참관기

## Report of Professional Practice Commission

이근창 / 본협회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주)엠앤디종합건축  
by Lee Geun-Chang

올해 제9차 UIA 실무용역위원회(PPC : Professional Practice Commission)가 이집트 수도 Cairo, Nile Hilton Hotel에서 개최되었다. 세계 각 지역에서 27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월22일 이집트 건축협회가 제공하는 저녁 만찬을 시작으로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본 협회는 UIA 제93차 이사회에서 한국건축가협회와 공동으로 FIKA(ad hoc body 명칭)를 구성한 이후 처음으로 공식 UIA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다. 실무용역위원회는 1994년에 UIA 산하에, 세계무역기구(WTO)가 건축 설계 부분을 포함한 전문직능 자격을 무역 자유화 대상으로 지정한 후 그로부터 건축 설계 실무용역에 관하여 국가간 상호 통용될 수 있는 표준안을 제정토록 위임받아, 발족한 위원회이다. 위원회에서는 6년간의 긴 논의를 거쳐 “건축실무 용역에 관한 국제 표준 권고 안” (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과 7개의 관련 부분의 지침 안을 작성하였다. 지침 안 내용에는 전문성에 관한 정의와 16개항의 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 상세한 배경, 정의, 원칙 등이 기술되어 있다. 본 권고 안은 1999년 북경 UIA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되어 각 회원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도록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 보고서(건축사 자격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작성되어 올해 3월에 건설교통부에 제출된 바 있다.

회의 진행은 첫날 오전에는 9명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에서 회의 진행 순서와내용들을 사전 조율하는 모임 이후 UIA Sgoutas 회장의 본 위원회의 중요성과 UIA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과 물” 등 각종 program에 적극 참여를 부탁하는 인사말을 필두로 시작되었다. Sgoutas 회장은 지속적인 회원국가의 교류를 통해 권고 안이 발전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며 모든 내용은 건축사가 되려는 각 개인의 능력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국 또는 미개발국간의 상호 이해를 고려한 공통된 사항을 담고 각 국의 고유 문화와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되 공중의 안전과 복지를 근간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UIA의 정신임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UIA-UNESCO간에 합의 된 건축교육의 질과 적정성 인정 위원회(“UNESCO-UIA Charter for Architectural Education “Committee for a Validation of Conformity and Quality in Architectural Education)의 활동에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본 위원회는 자문단을 포함하여 57명의 집행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며 현재는 각 지역별 2명(한국이 속해있는 4지역에는 호주의 Louis Cox와 일본의 Hozumi교수)을 합하여 17명의 자문단이 구성되어있다. 이어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되었던 제8차 의사록 승인과 의제채택이 있던 후 본 회의가 진행 되었다.

교육에 관한 UIA 방침(UIA Policy on Education) 터기의 Necdet Teymer 씨에 의해 발표되

본회의에서 논의되는 5개 세부규정들은 북경에서 채택된 7개 사항에 추가하여 2002년 Berlin 총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있는 것으로 각 인건에 대한 보고서는 초안(Report of Drafting Panel for the Recommended Guideline)이며 이에 대한 최종안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정, 결정된다. (필자 주)

었다. 발표요지는 다음과 같다.

방침의 기준은 UIA/UNESCO 건축교육협약에 의거 인가 / 인증 / 승인 된 대학교육기관에서 최소 5년간 각국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서로의 동질성을 인정하는 신축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이미 UIA 규약과 지침(Accord & Guideline)에서 논의된 바 있다. 여기에서는 더 구체적인 목표 설정, 역할, 책임, 한계, 조직, 내용 등을 대학교육에서부터 지속 교육까지 다루려고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 틀로는 교육체계구축, UIA 규약과 UIA/UNESCO 협약의 실행 전략, 학교평가지침 작성, 건축교육 발전방향 등을 정해야 한다. 건축교육은 전문 설계자 또는 시공 실행자(Designers / Builders)로서 창작적인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과 사회성, 친환경적인 감각 그리고 지적인 성숙도를 갖춘 국제 인으로 만드는 데 있다. 이를 위한 목표와 방향, 내용, 방법과 매개체, 운영, 구조와 자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발표 후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사전 교육 및 비전문가에 대한 건축이해를 위한 교육과 건축사 지속교육은 별도로 다루도록 하자는 의견과 Builders를 위한 교육 내용이 상세히 기술될 것이 요청되었다. 별도의 의견은 추후 서면으로 제시하기로 하였다.

전문협회의 역할(Role of Professional Institutes)은 프랑스 Herve Nourissat씨에 의해 프랑스어로 발표되었다. 주요 발표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개의 경우 전문협회들은 정부기관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으나 건축 전문 단체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야 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구로 제도의 개선과 지식의 향상하는데 힘써야 한다. 현재 각국은 전문협회가 정부 산하 기관으로 있기도 하고 독자적인 기능을 하는 곳도 있으며 아주 협회가 구성되지 않고 나라도 있다. 추후 협회를 구성하려는 국가는 UIA 규정에 적합하도록 구성할 것을 추천한다. 건축전문협회는 건축사가 공공에 의해서 평가되기 때문에 학문부분과 실무부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전문지발간, 강의 및 경쟁, 관광 등을 통해 일 반적인 전문성을 개발하여 공공의 이익과 건축사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현재 전문협회의 구성을 보면 독자적인 기구, Anglo Saxon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래된 Self · Regulating Institutes, 법과 규정에 의해 발족된 Orders, Unions, 그리고 ARCASIA를 포함한 지역별 건축관련 단체, 혼합구조체(mixed structure) 예를 들면 영국의 RIBA와 ARB에 의해 구성된 JVP 미국의 AIA, NCARB와

NASA에 의해 구성된 NAAB등이 있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전문 협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GATS의 목표인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의 기본 이념에 따르기 위해서는 첫째 무역장벽을 제거하는데 동등한 조건과 상호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불평등한 사항이 있으면 안되며 둘째, 진입장벽이나 불평등한 제한조건들이 투명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셋째, 건축전문협회가 자유스러운 교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건축사와 사용자(고객)를 동시에 보호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발표 후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기본 틀에 동감을 하였다.

초청국에서의 용역(Practice in a Host Nation)은 현재 PPC 공동 의장인 미국의 James Scheeler씨가 발표하였다. 건축사가 등록되지 않은 국가에서 용역을 수행할 때에는 현지의 법적, 환경적, 사회적, 문화 및 유적의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고려하여 현지 건축사와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서로의 협력관계는 UIA의 윤리규정과 현지상황과 제반 법규를 고려하여 상대 자끼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사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지 국가에 등록하여야 하나 건축주에 의해 현지에 등록되지 않은 타국의 건축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데 있다. 이는 추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서로간의 시간 낭비와 노력을 최소한하고 국가간 상호 인정이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의 기본 틀을 작성하는데 있다. UIA의 윤리 규약에 의하면 외국용역업자는 프로젝트가 있는 국가의 전문가와 꼭 함께 업무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 사항이 우선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 용역에 대한 책임한계(liability), 보험, 적용법률, 현지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세금, 건축사와 건축주와의 계약 조건 등. 둘째, 공공에 대한 책임한계, 건축사의 행위와 용역에 대한 법적 적용. 셋째, 외국건축사의 현지법 적용여부 단, 현재 건축사 등록제도가 없는 나라에서의 논의는 유보하기로 한다. 국제 현상설계에 의한 경우에는 현지 건축사와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발표 후 국제 기금에 의한 프로젝트에 대한 적용방안, 국제현상인 경우의 적용여부와 상호인정이 이루어진 나라에서의 적용사례 등이 질문되었고 발표자는 질문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주면 다음 회의에 적용 또는 답변 해주기로 했다.

둘째 날 회의에서는 지적소유권 및 저작권(Intellectual Property/Copyright)에 관하여 독일의

Tillman Prinz의 발표가 있었다.

UIA에서는 건축사 작품에 대한 지적소유권  
화 저작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  
이다. 예술적인 작품의 사용과 창작에 대한 정보수집과 교  
류 방법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작가의 권리와  
공중의 이익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예술 창작품을 보호하  
는 것도 필요하다. 우선 작가라 함은 그 작품을 만들어낸 자  
연인 또는 집단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작가는 작품을 창작  
한 개인 또는 고용인이나 저작권은 상업적 재산권임으로 작  
가에 의해 그 권리를 승계 할 수 있다. 보호대상은 저작권  
등록을 하였거나 법적 지위권을 갖는 자에 의해 작성된 1)  
일정 수준이상의 건축작품 2) 설계도서(시방서 전문가의 의  
견서 포함) 3) 시공된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작품보호에 따  
른 국가별 도덕기준에 따라 다른 부분을 인정하자. 이를 지  
키지 않는 자는 회원국의 관련 협회에서 제재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건축되어진 이후에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 제3의  
건축사가 보수·개선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원 건축사의 설  
계 의도가 보호되어야 한다. 이는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작  
가의 설계의도가 보호되어야 한다. 이는 건축주의 요구사항  
과 작가의 설계의도가 같이 만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저작  
권 보호기간은 작가의 사망이후 최소 50년간으로 한다. 발  
표 후 창작과 모방 등의 개념정리를 위한 논의와 더불어 저  
작권 보호법이 있는 국가와 없는 국가에서의 해석과 적용  
등에 대한 규명이 있었으며 차기 초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  
에 대한 지적사항이 요청되었다. 이어 싱가포르의 Edward D  
Silva 의 실무 범위(Scope of Practice)와 실무형태  
(Foam of Practice)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건축사 실무의 범위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완  
공되어 건축물을 건축주에게 제공할 때까지 아주 상세하게  
규명되었고 국가의 특성에 따라 규정으로 정하거나 관련 협  
회에서 내규로 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국에서  
공히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실무 부분과 추가 업무, 특수 업  
무로 구분하여 상대국과의 건축사 상호 인정이 되기 전까지  
사용하기로 하였다. 핵심업무라 함은 건축설계와 직접관련  
이 있는 계획·기본·실시설계 등과 더불어 인·허가,  
project 관리 등을 말하며 추가업무라 함은 사업성검토를  
포함하여 감리·중재·보증 등 설계업무와 직접관련은 없  
지만 건축주가 추가로 요청하는 업무이며, 특별업무란 도시  
계획 설계·조경설계·실내설계·환경 검토 등 설계와 관  
련된 특수 분야의 업무를 칭한다. 건축사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UIA의 윤리규정에 맞도록 수행해야하며 설

계에 대한 책임자 의무를 다해야 한다. 실무형태는 사회의  
이익을 우선으로 건축사의 역할을 근간으로 다양한 현지 국  
의 여건에 따라 구성해야함을 원칙으로 한다. 실무형태는  
소유와 관련 없이 각 개인 건축사의 업무에 더 비중을 두어  
야하며 대별하면 단독운영, 파트너십으로 운영, 한정된 파  
트너십 운영, 무한 주식회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실  
무 수행 형태로는 단체(group), 협력업체(collaborate),  
공동(consortium), 대학자체 참여(university based  
project office), 반계회사로 참여(subsidiaries)다분야 참  
여(multi-disciplinary)로 구분한다. 또 다른 형태로는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나 협회가 실무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의와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였다. 발  
표 후 일본에서 건설사가 건축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실태  
에 대한 기 배포된 유인물이 간략히 설명되었다.

오후에는 독일의 Tillman Prinz씨로부터  
UIA 규약이 각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  
를 발표하였다. 통계자료는 website [www.coac.net /  
internacional](http://www.coac.net/internacional)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 회원국중 55개국  
이 적용 상황을 보고하였다. 2001년 PPC 회의 개최 국은  
일본이 신청한 후 Costa rica에 양보함으로 결정되었으며  
2002년 회의는 UIA 총회와 동시에 개최자는 독일의 의견  
이 있었으나 추후 결정기로 하였다. 일본교육제도의 현주소  
와 개정방안에 대한 일본건축학회 Ryoichi Shimada 교수  
가 총괄건축교육(Holistic Architectural Education)에 설  
명이 있었으나 회원국의 호응을 받지는 못했다. 개정방안으  
로는 현재 4년째 건축 전반적인 교육에 국제적인 기준에 적  
합한 2년째 건축 전문교육을 시행하려는데 틀을 맞추고 있  
었다.

PPC 회의는 UIA를 대변하여 권장 안을 작  
성하고 있으나 각국의 특성과 문화를 최대한 존중하며, 유  
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세부사항들이 논의하고 있음으로 국  
내의 입장과 의견이 정리되어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  
력하고 이에 따른 국내 건축 계의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특히 논의 사항 자체가 실무 부분과 법적 제도 간의 조  
율이 불가결하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 전문가의 양성  
과 지속적인 참여로 참가자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정립하여  
각국의 흐름과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 세계화와 자유 무역 체제하에 장래 건축사들  
이 세계시장에서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로를 열  
어주는 지혜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다. ▣